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생활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철도물류의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의 자산,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,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 범위 제한 완화 (안 제7조의2 제3항)

현행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는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“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”으로 제한되어 있으나, 공사의 자산,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조문 정비(안 제7조의2 제2항, 제3항)

「화물유통촉진법」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으로 '07.8월 전부개정되었으며, 종합물류기업 등 5개 인증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'15.6월 통합된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“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제5호”를 “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는 물류사업으로서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”를 “「물류정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”로, “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(이하 “철도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철도시설”로 한다.

1.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
2. 공사의 자산,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(이하 “철도시설”이라 한다)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한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의2(역세권 개발·운영 사업 등) ① (생략)		제7조의2(역세권 개발·운영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·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철도 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시설		1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----- ----- -----		
2.·3. (생략)		2.·3. (현행과 같음)		
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란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는 물류사업으로서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.	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	
<신 설>		1.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		

<u><신 설></u> ④ (생 략)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1. 「<u>철도산업발전 기본법</u>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(이하 “<u>철도시설</u>”이라 한다)이나 철도부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2. ~ 6. (생 략)	2. 공사의 자산, 「<u>철도산업발전 기본법</u>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(이하 “<u>철도시설</u>”이라 한다)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한 사업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<u>철도시설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71